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28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채현일 · 정준호 · 장철민
이광희 · 양부남 · 오세희
박범계 · 조승래 · 한민수
최민희 · 이강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제3항제3호 중 “제58조의2 단서”를 “제58조의2제1항 단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생략) <u><신설></u>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현수막 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방법으 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 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1. 2. (생략)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 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 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4. (생략) ④ · ⑤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58조의2제1항 단서----- -----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